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검 토 보 고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76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주요내용	6
2. 제정안의 필요성	9
3. 집단소송법 입법론	25
4. 주요 조문별 검토	34
※ 참고자료	8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주민의원 등 14명
2. 발 의 일: 2024. 12. 6.
3. 회 부 일: 2024.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증권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인 경우에만 집단소송의 방식을 인정하므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함.

그러나 소비자 피해의 경우 일정 사건으로 인해 동일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임.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한정함(안 제3조).
- 다.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 라.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 바.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아.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피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구성원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 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

31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2조).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1조).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안 제62조).

너.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
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함(안 제63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다수의 집단적인 소비자피해 사건을 개별적 분쟁해결을 전제로 하는 현행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은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③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④ 구성원 50인 이상 등의 소송허가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절차가 개시되며, ⑤ 소송절차에서 직권증거조사 및 당사자신문의 특칙 등이 적용되고, 손해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⑥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부에 미치고, ⑦ 대표당사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실행하여 취득한 금전 등은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을 통해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쟁점	조문	주요내용
대상	제2조제2호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포함)
	제3조	○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위반 ○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할	제4조	○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변호사강제주의	제5조	○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소송개시	제7조	○ 대표당사자가 되려고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법원의 대표당사자 선임	제10조, 제11조	○ 법원이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원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대표당사자가 되기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 제출

쟁 점	조 문	주 요 내 용
		○ 법원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공고 후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로 선임
소송허가요건	제12조	○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행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소송절차	제3장 제30조~ 제39조	○ 증거조사에서의 특칙: 직권증거조사, 당사자신문의 특칙, 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의 특칙 등 ○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 방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의 효력	제28조, 제38조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침
분배절차	제4장 제40조~ 제60조	○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지체없이 권리를 실행하여 금전 등을 취득하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보관 ○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에 분배계획안을 작성·제출하며 분배계획안은 인가받아 그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 ○ 구성원은 분배계획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 후 분배금을 수령 ○ 수령기간이 지난 후 잔여금은 공탁하며 기간종료 후 6개월까지 미수령 시 잔여금은 피고에게 지급함.
벌칙 등	제62조~ 제65조	○ 대표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 등의 배임수재죄, 몰수·추징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

2. 제정안의 필요성

가. 현행 다수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방안 및 집단소송의 필요성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분쟁에 대하여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 외에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① 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¹⁾이나,
- ②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선정당사자 제도’²⁾가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불량식품 유통 등 피해액이 소액이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배상액이 소액인 반면, 소송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사업자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등 기존 제도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됨.

1)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사업자 등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피해자 중 1인 또는 다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와, 개별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단체소송제도’가 논의됨.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소송유형	의 미	입법례
집단소송	○ 다수인에게 집단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 ○ 소송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외신청을 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 모두에게 미침(Opt-out 방식) ○ 영국 등의 경우 미국과 달리 참가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방식을 인정함(Opt-in 방식) ○ 손해배상의 청구에 중점	○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 대표적임 (그 외 캐나다의 Class Proceeding, 영국의 Group Action, 중국의 대표자소송, 독일의 표본소송절차, 일본의 선정당사자 추가제도·대규모소송제도 등) ○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 ○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만 도입되어 있음(2005. 1. 시행)
단체소송	○ 공공이익이 침해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원고가 되어 그 단체이름으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	○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대표적임 ○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단체에 의한 소송을 허용

소송유형	의 미	입법례
	○ 위법행위의 금지청구(부작위청구)에 중점 ○ 단체가 승소한 경우에만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침	○ 우리나라에는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 제70조 이하(2008. 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이하에 도입되어 있음(2011. 9. 시행)

자료: 법원행정처

이 중 단체소송은 사업자 등에게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어³⁾ 피해자 구제에 한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계가 있다고 보이나,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인 피해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송허가요건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후 20년간 집단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고,⁴⁾ 그 적용 범위도 증권 관련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집단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허가요건 등 소송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4)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증권관련집단소송 진행 내역 참조.

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찬반론

집단소송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 또는 공동소송보다 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단체소송보다 권리구제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 논거가 있음.

찬성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

첫째, 원·피고 사이에 다수의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한 집단소송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임.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① 원고 측에서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② 피고 측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개별 소송들을 개별적으로 방어하기 보다는 집단소송에 대한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③ 법원의 입장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소송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둘째, 개인당 배상액이 적어 개별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라도 집단소송을 통해 소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전에는 피해를 입고도 제소가 힘들었던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배상액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 등 사업자는 부적절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게 되어 불법행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집단소송을 통해 부정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예컨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부적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기업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기업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임.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

첫째, 집단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⁵⁾나 기관력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음.

집단소송의 경우 구성원의 의사표시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성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은 그 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미친다고 보는데, 이 경우 소송당사자, 승계인이 아

5)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닌 구성원⁶⁾ 전부에게 그 기관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⁷⁾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둘째, 남소(濫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집단소송은 개별 당사자들의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부담은 적고, 소송을 수임받은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남소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셋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청구를 도입하는 등 단체소송을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임.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총원"(總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填)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총원"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4.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 중 제6호의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민사소송법」 제218조(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법인 「소비자기본법」에서 이미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단체소송의 종류에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는 등 단체소송을 보완함으로써 단체소송을 소비자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방안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보임.

다. 해외 입법례⁸⁾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에 따라 집단소송이 시행되며,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⁹⁾ 다수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이라면 집단소송을 허용하면서 원고 승소 시 피고 측이 출자한 자비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부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취하고 있음.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3조(a)항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구성원의 다수성(numerosity): 개별적인 소송을 병합해 원고가 다수인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impracticable)할 정도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고, 2005년 집단소송공정화법(CAFA) 제정 이후에는 최소 100인 이상의 원고가 소 제기 요건으로 규정됨.

② 쟁점의 공통(commonality): 구성원 전체에게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법

8)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3. 해외 입법 사례 참조.

9) 집단소송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석면·고엽제 피해,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제조물책임, 의료사고(실리콘겔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등을 들 수 있음.

이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됨.

③ 청구의 전형성(typicality): 대표당사자(class representative)의 청구내용이 집단 구성원 전체가 주장하는 청구내용의 전형(typical)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대표당사자가 소송에 있어 다른 당사자들과 상충되는 이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④ 대표당사자의 적합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대표당사자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해관계의 존재 및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재정능력, 변호인의 능력 및 경험 등 포함)의 보유 등을 요구함.

독일은 집단소송 대신 개별법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등이 단체소송(verbandsklage)을 제기할 수 있는바,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79조에 근거하여 소비자센터 및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소송 제기가 가능함.

또한,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소비자법 위반과 기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법률’(UKlaG)은 무효인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철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청구소송(Unterlassungsklage)을 규정하였고, ‘부정경쟁금지법’(UWG)은 고의로 법 제3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거래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어 사람에게 국고에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이익환수청구소송

(Gewinnabschöpfungsklage)을 두었으며, ‘자본투자자대표소송법’(KapMuG) 및 ‘민사소송법’(ZPO)에서는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등에 관한 내용을 두었고, 2023년 ‘소비자 권리의 일괄 실행에 관한 법률’(VDuG) 제정으로 기존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던 표본확인소송을 통합하고 구제청구소송을 제도화하였음.

일본은 2013년 12월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절차특례법(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1차적으로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사업자¹⁰⁾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위 의무확인 후 2차적으로 간이확정절차를 거쳐 채권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2단계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음.

간이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채권을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신고소비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간이확정절차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

프랑스는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제2편에서 소비자보호단체의 소권(Titre II: Actions en justice des associations de défense des consommateurs)을 규정하며, 제1장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10) 2022년 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업감독자 및 피용자를 피고로 하는 것도 인정됨.

소송(Chapitre I Action exercée dans l'intérêt collectif des consommateurs), 제2장 공동대리소송(Chapitre II Action en représentation conjointe) 및 제3장 단체소송(Chapitre III Action de groupe) 등 소송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제1장의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중 하나로 소비자 단체는 사소권(私訴權, 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의 집단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 사소(私訴) 당사자로서 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2장의 공동대리소송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이 아닌 특정 소비자의 위임에 따라 그들의 개별적 손해를 소비자단체가 대리해 청구하는 제도이고, 제3장의 단체소송의 경우 제1단계는 소비자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확인판결을 구하는 단체소송이며, 제2단계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확인판결 이후 개별적 소비자나 소비자집단(소비자단체가 아닌 다수 소비자를 의미하는 소비자그룹의 개념)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절차임.

영국은 집단소송(Group Litigation)을 개별법이 아닌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199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나 법률적 문제에 있어 공통 또는 관련된 쟁점을 지니는 사건들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하나, 집단소송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구성원 명부(Group Register)에 등재해야 집단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는 참가신고(Opt-in) 방식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제외신고(Opt-out)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다만, 경쟁법 분야에서 소비자·기업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부당공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금지 위반에 한정하여 제외신고(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함.

＜주요국 입법례＞

국가	제도모델	원고적격	피해자 소송관여 ¹¹⁾	소송단계	청구 (소송물)	적용범위
대한민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표당사자	Opt-out	1단계	손해배상	증권관련
미국	대표당사자소송	대표당사자 (구성원)	Opt-out	1단계 (총액판결)	-손해배상 -행위금지/확인	민사일반
독일	투자자- 표본절차	표본원고 (구성원)	Opt-in	1단계 (2단계는 개별진행)	확인	자본시장
	표본확인 소송법안	적격단체 (제3자)	Opt-in	1단계 (2단계는 개별진행)	확인	소비자
	단체소송 (금지청구)	단체	-	-	행위금지	-경쟁 -소비자, 약 관 -저작권
일본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	적격소비자 단체	Opt-in	2단계	-1단계: 확인 -2단계:금전 배상	소비자
프랑스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	적격소비자 단체	Opt-in	2단계	-1단계: 확인 -2단계:손해 배상	-소비자 -보건(건강) -노동(차별 금지) -환경 -개인 정보 보호
영국	대표소송	대표자	Opt-out	1단계	손해배상은 예외적	민사일반
	집단소송 (경쟁법)	대표자 (제3자가능)	Opt-in/out 법원선택	1단계	- 손해배상 - 행위금지	경쟁
	집단소송 (표본소송)	당사자 (구성원)	Opt-in	1단계	손해배상	민사일반

자료: 법원행정처

11) 옵트아웃(Opt-out)은 집단소송허가가 있는 뒤에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개별 피해자가 법원에 기판력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이고, 옵트인(Opt-in)은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판결 또는 공동의무확인이 있는 뒤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개별 피해자가 기판력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임.

<집단소송의 구조 모델>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 미국식 집단소송 (Opt-out, 1단계형)	단체소송형 집단소송 일본, 프랑스식 집단소송 (Opt-in, 2단계형)														
해외 입법례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본, 프랑스 등														
기관력	Opt-out 방식 (제외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기관력 배제)	Opt-in 방식 (참가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기관력 발생)														
원고적격	대표당사자형(피해자)	단체소송형(소비자단체 등 제3자)														
구 조	○ 구성원 전체를 위한 총액판결 또는 급부판결 ○ 해당 소송에서의 판결을 기초로 분배절차를 진행	○ 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 - 공통쟁점(위법성, 책임 등 손해 배상책임의 인정)을 심리하여 손해배상채무 존부를 확정(확인 소송) ○ 2단계 채권확정절차 - 개별 구성원별 심리를 진행 (구체적 배상액 결정)														
절 차	<table><tr><th colspan="2">권리·의무 확정절차(1단계)</th><th>권리실행절차</th></tr><tr><td>집단소송 절차</td><td>--></td><td>분배절차 (법원의 지휘·감독·협력)</td></tr></table>	권리·의무 확정절차(1단계)		권리실행절차	집단소송 절차	-->	분배절차 (법원의 지휘·감독·협력)	<table><tr><th colspan="3">권리·의무 확정절차 (2단계)</th><th>권리실행 절차</th></tr><tr><td>공통의무 확인소송 절차</td><td>--></td><td>채권확정 절차 (법원 신청)</td><td>집행절차</td></tr></table>	권리·의무 확정절차 (2단계)			권리실행 절차	공통의무 확인소송 절차	-->	채권확정 절차 (법원 신청)	집행절차
권리·의무 확정절차(1단계)		권리실행절차														
집단소송 절차	-->	분배절차 (법원의 지휘·감독·협력)														
권리·의무 확정절차 (2단계)			권리실행 절차													
공통의무 확인소송 절차	-->	채권확정 절차 (법원 신청)	집행절차													

라. 소결

다수의 피해자에게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특정하여 집단소송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남소의 부담을 덜면서도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집단소송의 확대 도입에 따라 개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집단소송 도입의 찬반론을 고려하여 집단소송의 전면적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2025. 4.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96호)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집단소송법 입법론

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 제한적 도입과 전면적 도입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은 손해의 발생영역과 손해의 종류를 ①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여 신속한 재판과 남소의 억제를 도모할 것인지, ② 포괄적인 적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손해의 발생영역을 기준으로, ①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집단소송의 범위가 제한되어 남소의 우려가 적고 피해자인 구성원의 범위가 명확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나, 새롭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임.

반면, ② 민사 일반에 적용하는 방식은 새롭게 발생하는 다수 피해 영역에 법 개정 없이도 집단소송을 적용할 수 있어 넓은 범위에서 집단소송을 활용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집단소송의 유형이 지나치게 확대될 여지가 있어 구성원 확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남소의 우려가 있다고 보임.

손해의 종류를 기준으로, ① 물적 손해와 같이 피해의 정도와 유형이 유사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법원의 일률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어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가 지나치

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반면, ② 물적 손해뿐 아니라 인적 손해와 같이 피해의 정도와 유형이 상이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인정하여 다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피해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별도의 심리 절차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소송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과 실효성, 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효과와 재판의 신속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나. 원고적격 : 대표당사자와 단체

집단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와 ② 피해자 외의 제3자로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단체소송형 집단소송)로 나눌 수 있다고 보임.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나, 모든 피해자가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남소의 우려가 있다고 보임.

반면, **단체소송형** 집단소송은 특정 소비자단체에만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남소를 차단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나, 해당 소비자단체로서는 보상금 등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원고적격은 그 소송을 수행하여 법적 이익을 얻을 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대표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나,

집단소송은 다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소송으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될 수 있어 공익 추구를 위한 객관소송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

익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원고적격 규정의 취지와 공익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의 성격, 남소의 가능성, 집단소송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다. 기판력 : 제외신고형(Opt-out) 방식과 참가신고형(Opt-in) 방식

집단소송제도는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방식에 따라 제외신고형 또는 참가신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제외신고형 집단소송(Opt-out)은 구성원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집단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을 말하고, ② 참가신고형 집단소송(Opt-in)은 피해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임.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은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 전체를 ‘집단’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동일한 형태의 집단소송구조를 갖추게 되어 제도 운용이 참가신고형 방식에 비해 수월할 수 있다고 보임.

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한, 대표당사자가 패소하거나 그 배상액이 적은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소송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구성원에게 불리한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칠 수 있음.

참가신고형 집단소송은 기관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자에게만 기관력을 확장하여 피해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할 수 있고, 피해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참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유리할 여지가 있음.

다만, 참가신고형 집단소송은 피해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개별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집단소송의 실효성이나 파급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집단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범위는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통일성, 처분권주의와의 법체계적 정합성, 피해자 구제의 유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기관력의 범위에 대한 입법론>

구분	제외신고형(Opt-out)	참가신고형(Opt-in)
의미	피해자들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구성원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미치게 하는 방식	피해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명시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
해외 입법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일본, 프랑스
집단소송제도 실효성 등	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 정도가 각기 다른 경우에도 집단소송절차를 통해 범위 확정이 가능하여 <u>단일한 분쟁 해결이 가능함</u>	개별 소비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 <u>제외신고형에 비해 집단소송으로서의 실효성이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음</u>
기관력의 편면적 확장	제외신고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판결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u>현행 기관력 체계나 처분권주의와 충돌할 우려, 이후 구제가능성을 봉쇄할 우려</u>	소비자들이 1단계 절차의 결과를 보고 2단계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1단계 <u>패소의 기관력을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고 유리한 결과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음</u>
피해자들의 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	개별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u>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상당기간에 걸친 소송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점 고려 필요</u>	기관력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u>개별 피해자들의 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적음</u>

라. 구제 단계 : 단일 절차(1단계형)와 복수 절차(2단계형)

집단소송은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단일한 절차에서 종국적인 배상책임을 완전히 결정하는 경우(1단계형)와 ② 개별 손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인 채무이행의무만을 확인하고 개별 손해에 대한 산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2단계형)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단계형의 경우, ① 피해자의 손해 총액을 합산하여 이를 배상할 것을 명하고 별도의 분배절차를 통해 손해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인 배상액을 확정하는 ‘총액판결형’과, ② 개별 피해자의 특성에 맞추어 법원이 개별 손해액을 특정하여 배상하도록 명하는 ‘급부판결형’이 있고,

2단계형의 경우, 공통의무확인절차가 종결된 후에 ① 개별 피해자가 후속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와, ② 소비자단체 등이 채권신고를 받아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받는 형태로 나눌 수 있음.

집단소송의 형태를 총액판결형의 1단계형으로 하는 경우, 다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나, 피해양상이 다양하거나 그 정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반면, 급부판결형의 1단계형 또는 2단계형으로 하는 경우 소송경제에

는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개별적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달리 조정할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보임.

즉, 총액판결에 의한 단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신속한 재판 및 구제 절차로 다수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억제한다는 집단소송의 취지를 실현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에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그 피해의 정도 및 규모가 상이할 수 있어 구체적인 배상액의 확정은 급부판결형 또는 복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어떠한 집단소송의 구제 절차를 채택할지는 집단소송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및 집단소송을 도입한 국가의 법체계와 법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4.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으로 하고 있는바, 제명에 집단소송법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두어 이 법의 목적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명은 법률의 고유한 명칭으로서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간결성), 주요 규정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대표성),¹²⁾

제명에 주요 규정내용이 아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두는 것이 제명의 간결성과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 하고 있음.

1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74~75면.

집단소송의 취지는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 등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제정안은 소비자 영역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집단소송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임.

나. 소비자 및 소비자집단소송 정의(안 제2조제1호·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소비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2. “소비자집단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3. ~ 7. (생략)

안 제2조제1호는 소비자에 대해 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또는 ② 소비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함.

먼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¹³⁾의 경우,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면은 있다고 보이나, 안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로

1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고 보이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므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소비자기본법」의 정의조항을 가져온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제1호 가목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¹⁴⁾의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위조 등에 따른 피해의 특성상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집단소송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원은 ①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②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하며,

후원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함.¹⁵⁾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은 상위 판매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중적 지위가 있는 면이 있고,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소비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손해를 입은 ‘판매원 아닌 소비자’는 이 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받은 물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인데, 안 제2조제2호는 ‘소비자집단소송’을 “사업자¹⁶⁾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하는 것이라 하여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6)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소비자는 ‘최종적인 사용자’를 의미하므로¹⁷⁾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소비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집단소송의 범위(안 제3조, 안 제12조제1항제5호)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구성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대표당사자의 피해와 동종의 것으로 본안 소송에서 개별구성원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안 제3조에 따르면, ① 「소비자기본법」 위반, ② 제조물 책임 영역, ③ 공정거래 영역, ④ 개인정보 영역, ⑤ 표시·광고 영역, ⑥ 전자상거래·할부거래·방문판매 관련 법률 위반,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의 손해배상청구를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함.¹⁸⁾

안 제3조는 특정한 소비자 영역에서의 손해배상청구만을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소(濫訴)를 방지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18) 참고자료 2. 제정안에 따른 소비자집단소송의 적용범위 참조.

안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표당사자와 구성원 사이의 피해가 동종인 것에 대해서만 소비자집단소송이 허가될 수 있으므로, 같은 소송에서 다른 종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심리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안 제3조제1호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¹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는데, 위반행위가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²⁰⁾가 있어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위가 인용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보임.

- 19) 「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 예컨대, 「소비자기본법」 제11조에서는 위해 우려 광고의 시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정한 광고의 시간제한 기준은 「방송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략)

둘째, 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²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²²⁾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는데, 이는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집단소송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된 면이 있다고 보임.

셋째, 안 제3조제7호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²³⁾에 부합하지 않는 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3) 헌재 1999. 5. 27. 98헌바70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라. 전속관할(안 제4조)

제4조(관할) 소비자집단소송은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안 제4조는 다수의 피고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²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전속관할로 하였는바, 이는 관할의 문제로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총칙의 관할 규정은 피고가 다수인 소비자집단소송뿐 아니라 피고가 1인인 소비자집단소송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가 1인인 소비자집단소송의 관할도 따로 규정하는 방안 또는 전속관할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규정하고 피고가 여럿일 경우에는 안 제5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재판적 규정²⁵⁾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24)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관할)을 보통재판적이라 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이를 피고와 관계 있는 곳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음.

25)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집단소송²⁶⁾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 관할 조항²⁷⁾에서는 피고가 다수일 것을 전제한 관할법원 규정을 두지 않았음.

2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27)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71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마. 변호사 강제주의(안 제5조)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 제5조는 원고로 하여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집단소송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판과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집단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이 안 제38조²⁸⁾에 따라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인 구성원 전원에게 미치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원고 측에만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²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⁰⁾

28) 안 제3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29) 「소비자기본법」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바. 소송허가신청 및 인지대의 상한(안 제7조)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항소심의 인지액 상한은 1천500만원으로, 상고심의 인지액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은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로 하여금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소송허가가 있어야 집단소송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집단소송이 다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법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임.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소비자집단소송의 인지액 상한을 제1심에서는 1천만원, 항소심에서는 1천500만원, 상고심에서는 2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지대 상한의 설정은 집단소송의 청구금액이 개별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거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해 그 상한액을 어느 정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및 인지액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집단소송의 남발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인지액 상한을 제1심에서는 5천만원으로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있음.³¹⁾

3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사.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② 제1항제5호의 총원의 범위는 그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경력
6. 제12조 각 호의 요건³²⁾을 충족하는 사유
7.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약정

안 제8조제1항 각 호 및 제9조는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는데,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임.

32) 안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3조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5. 구성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대표당사자의 피해와 동종의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개별구성원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안 제9조제7호에서는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약정을 소송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불합리한 보수약정에 따라 승소에도 불구하고 분배금에서 과도한 변호사 보수가 선공제되어³³⁾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임.

한편, 안 제9조 제목은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만이 있고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제목을 내용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3) 안 제46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아. 소제기의 공고(안 제10조)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③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불인 인지의 액면 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는 법원이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제기 사실, 총원의 범위 등 소비자집단소송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법원은 공고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동일한 규정으로,³⁴⁾ 소제기의 공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알리는 한편, 그 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0조제5항은 법원의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또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라는 집단소송의 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임.

3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제9조제2항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불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안 제11조)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안 제11조는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³⁵⁾과 달리 집단소송 관련 전력(前歷)에 따른 제한이 없음.

집단소송에 관여한 전력을 이유로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기획소송을 차단하고 남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집단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등이 등장하기 어려워 집단소송의 활용이 저조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전력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둘 것인지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3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소송허가요건(안 제12조)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3조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5. 구성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대표당사자의 피해와 동종의 것으로 본안 소송에서 개별구성원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안 제12조는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요건으로, ① 다수성(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다만, 소 제기 후 다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제1항제1호 및 제2항), ② 공통성(법률상 ·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될 것; 제2호), ③ 적정수단성(총원의 권리실현에 적합 · 효율적 수단일 것; 제4호), ④ 산정가능성(대표당사자와 구성원 사이에 동종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제5호)을 규정하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해당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적정 · 공정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호).

다수성 요건 관련하여,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그 취지

로 하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는바,

안 제3조 각 호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손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손해 유형에 따라 피해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성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임.

카. 소송허가결정(안 제15조)

제15조(소송허가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 보정 등을 명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안 제15조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적용범위(안 제3조),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안 제11조),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요건(안 제12조)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집단소송을 허가하되, 법원은 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도록 규정함.

소송허가재판에 기한을 두는 것은 신속한 심리를 통해 다수 피해자의 손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손해의 유형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구성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액 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장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³⁶⁾

한편, 안 제6조³⁷⁾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가능한데,³⁸⁾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 없이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 소송허가결정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제4항³⁹⁾과 같이 즉시항고 규정을 두어,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⁴⁰⁾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송허가결정의 당부에 대한 결

36) 참고로, 「민사소송법」은 변론종결 후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되, 복잡한 사건 등의 경우 기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37) 안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38)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3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即時抗告)할 수 있다.

40)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소송비용의 예납(안 제16조)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납이 유예된 소송비용 및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⁴¹⁾를 준용한다.

안 제16조제2항은 법원이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도록 하되,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참작하여 위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⁴²⁾에 따른 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소송비용 등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집단소송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고지·공고·감정의 비용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지출되어야 하므로 예납의 유예로 소송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41) 「민사소송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채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채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42)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은 가압류명령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담보의 제공 즉시 담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담보제공의 예납”이라는 문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파. 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안 제23조)

제23조(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 ①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구성원 10인 이상이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추가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안 제23조는 대표당사자 일부의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되, 법원의 직권 또는 구성원 10인 이상의 신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잔존 대표당사자로는 소송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대표당사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집단소송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제2항에서 대표당사자가 추가되는 경우를 추가 ‘선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 제10조⁴³⁾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한다고 하고

43) 안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 제외신고와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안 제28조 및 제38조)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정안의 소비자집단소송은 안 제28조에서 제외신고를 규정하면서 안 제38조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게도 미친다고 하여 ‘제외신고형 집단소송(Opt-out)’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집단소송의 기관력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방식은 ① 구성원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집단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받는 방식(제외신고형 집단소송, Opt-out)과, ② 피해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참가신고형 집단소송, Opt-in)으로 나뉨.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의 경우, 구성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도 패소의 기판력까지 개별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등 민사소송의 처분권주의⁴⁴⁾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유형이 유사하여 대표당사자와 구성원이 누구든 그 공격방어방법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기판력의 일괄적 적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집단소송의 취지를 실현하는 면이 있다고 보임.

제정안의 소비자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와 구성원이 입은 손해가 동종이 되도록 하였고,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⁴⁵⁾ 그 적용범위도 일정한 영역의 소비자피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⁴⁶⁾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44)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45) 안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구성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대표당사자의 피해와 동종의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개별구성원의 손해액 산정의 가능할 것

46) 안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협조 없이도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황을 특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집단소송은 피해자 여부의 판단과 그 특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기관력이 미치는 구성원의 범위를 두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바,

제정안의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을 채택할지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취지와 특성,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와의 정합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유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거. 소송절차의 특칙(안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2조(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3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6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및 문서송부촉탁을 당사자가 신청하

도록 하고 있는데,⁴⁷⁾ 안 제32조는 제1항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사자의 신청에 관한 내용은 제3항에 두었음.

그리고 제4항에서 대표당사자와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에 대해 개괄적 기재를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모색적 증거신청’⁴⁸⁾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는 문서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거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증거의 편재성(偏在性)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소비자집단소송에 이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여지가 있고, 피고 사업자 등도 이를 이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은 제1항이 아니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용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7)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주장하지 않고 먼저 증거신청부터 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구체적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임. 증거 낚기를 목적으로 하는 남용적인 증거신청을 막고 단순히 혐의 있는 것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남소로부터 법원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색적 증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7, 479면).

안 제33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현상보전명령’을 도입하고 당사자(대표당사자 및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하여 검증·감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검증·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민사소송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는 없는 증거조사의 특칙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이 구성원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증거물의 현상보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목적물 소지·관리자의 사생활 보호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현상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제도를 보완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안 제35조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고 볼 것이나⁴⁹⁾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4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추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이는 손해의 유형상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비자의 적정한 권리구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집단소송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⁵⁰⁾에서도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 손해배상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특칙을 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¹⁾

안 제36조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강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⁵²⁾ 대표당사자와 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 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⁵³⁾ 이를 보완⁵⁴⁾할 필요가

50)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5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4조제2항에는 제정안 제35조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가 증권과 관련한 손해액의 계산 시점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우선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52) 안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53)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있다고 보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5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너. 분배절차(안 제4장, 제40조~제60조)

(1) 분배절차 개관

제정안의 분배절차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분배절차 부분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임.

소비자집단소송의 수소법원은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구성원 전체의 총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함(총액 판결형, 1단계형).

소비자집단소송의 인용 판결이 있는 뒤에는 제1심 수소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분배법원에서 별도의 분배관리인이 선임되어 분배법원의 감독에 따라 분배절차를 진행함(안 제40조 및 제42조).

구성원은 분배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고 이를 분배관리인이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구성원 또는 피고는 확인결과를 통지받은 후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권리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권리확인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안 제51조 및 제52조).

권리를 확인받은 구성원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권리신고기간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기간 경과

후 90일 이내에 한하여 공탁된 분배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 55조).

분배관리인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함(안 제56조 및 제57조).

<분배절차의 구조>

구 분	조 문 명
총 칙	제40조(분배법원)
	제41조(권리의 실행)
	제42조(분배관리인)
분배계획안의 인가 및 공고	제43조(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4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제45조(분배의 기준 등)
	제46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제47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8조(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9조(분배계획의 공고)
권리신고와 분배실행	제50조(분배계획의 변경)
	제51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52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3조(잔여금의 공탁)
	제54조(분배보고서)
	제55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분배 후 절차	제56조(분배종료보고서)
	제57조(잔여금의 처분)
기 타	제58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9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60조(추가분배)

(2) 구제 절차의 구조

제정안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구성원 전체에 대한 배상 총액을 판결하고, 이를 분배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총액판결형(1단계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보임.

집단소송의 구제 절차는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단일한 절차에서 종국적인 배상책임을 완전히 결정하는 경우(1단계형)와, ② 적정한 손해배상을 위해 구성원별로 손해액을 결정하는 단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2단계형)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일 절차에 의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소비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손해의 종류가 구성원마다 상이한 경우에는 적정한 배상액 확정을 위해 복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임.

제정안은 대표당사자와 구성원 사이에 손해가 동종인 경우에만 소비자 집단소송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단일 절차를 채택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한 것으로 보임.

(3) 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안 제46조)

제46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략)

안 제46조제2항은 분배관리인이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비용에 분배비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분배관리인이 분배비용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⁵⁵⁾

이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구성원 및 증권계좌 등이 이미 파악되어 있어 분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반면, 소비자집단소송은 판결 선고 후 단계에서 권리신고자가 과연 구성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5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적 심사가 분배관리인에 의해 수행되고, 다수의 구성원에게 고지를 하려면 언론매체 광고가 필요할 수 있는 등 분배를 위한 구성원 파악 및 고지작업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4) 분배계획안의 인가(안 제48조)

제48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안 제48조는 분배절차의 감독을 위하여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분배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안 제6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의 인가·수정인가 결정에 분배관리인이 불복하는 경우 분배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참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신속한 분배를 위해 법원의 분배계획안의 인가·수정인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⁵⁶⁾을 두고 있음.

5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분배계획의 공고 및 변경(안 제49조 및 제50조)

제49조(분배계획의 공고)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50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49조는 법원이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 집행권원의 요지 등을 공고하고,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공고’는 특정 정보나 절차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이며, ‘고지’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통지로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제정안에서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공고로 규정한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소비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6)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안 제55조)

제55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안 제55조에서는 ①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나,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확인받은 자에 대해 분배금 수령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도 같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⁵⁷⁾

수령기간의 경과 후라도 권리가 있다고 확인된 자에 대해 분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로 볼 것이나, 그 기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할지는 법적 안정성 및 소비자집단소송의 특성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7) 잔여금의 처분(안 제57조)

제57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5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안 제57조는 분배 후 잔여금의 처분에 관하여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동일하게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분배 후 잔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① 피고에게 반환, ② 구성원 재분배, ③ 국고귀속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임.

제정안은 구성원이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상액을 취득할 적극적 의사가 없다고 보고, 집단소송의 구성원 총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잔여금을 피고에게 다시 반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더. 벌칙규정 및 필요적 몰수·추징 (안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2조(배임수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조(배임증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64조(몰수·추징) 제61조 및 제6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분배절차와 관련된 자에 대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그 취득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벌칙규정과 유사한 규정⁵⁸⁾을 두고 있음.

대표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이고,

위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는 것은 범죄 예방과 실질적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58) 배임증재등에 대한 벌금형만 다름(「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러. 과태료(안 제65조)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호, 제5호, 제7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의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65조제1호는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인 소 제기자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력(제9조제5호),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약정(제9조제7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소비자집단소송에 있어 소송대리인에 의한 기획소송·남소 및 변호사 보수의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소송대리인의 경력 및 보수를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의 거짓 기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안 제65조제2호 및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또는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나 제3자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의 소지자 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집단소송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고 보아 증거가 되는 문서 및 목적물의 소지자 등에게 증거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32조제2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 및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이러한 예외상황을 포섭할 수 있도록 안 제65조제2호의 인용조항을 제32조제2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 6788-5061

※ 참고자료

1. 증권관련집단소송 진행 내역(2025. 3. 기준)

연 번	소 제기 공고	사건번호	피고	사건 내용	경과
1	2009. 4.	수원지법 09가합8829	(주)진성티이씨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2010. 2. 소송허가결정 2010. 4. 본안 1심 화해허가 결 정 2010. 9. 분배계획안 인가결정 2012. 1. 분배종료(2년 9개월 소요)
2	2010.12.	서울중앙 10가합1604	로알뱅크 오브 캐나다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만기일 종가조작	2012. 5. 소송불허가결정 2015. 4. 대법원 파기환송 2015. 11. 항소심 소송허가결정 2016. 4. 대법원 소송허가결정 확정 2017. 2. 본안 1심 화해허가 결 정 2017. 4. 분배계획안 인가결정 2019. 5. 분배종료(8년 5개월 소요)
	2011.12.	서울남부 11가합23003	한화증권(주)		
3	2011.10.	서울남부 11가합19387 서울고등 18나2045009 대법원 19다223747	동부증권(주) 외 1명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로 변경)	(주)씨모텍의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2013. 9. 소송허가결정 2016. 11. 대법원 소송허가결정 확정 2018. 7. 본안 1심 판결(일부 인 용) 2019. 2. 항소심 항소기각 2020. 2. 대법원 상고기각 2020. 6. 분배계획안 인가결정 2021. 5. 분배보고서 2022. 12. 분배종료(11년 2개월 소 요)
4	2012. 3.	서울중앙 12가합17061	한국투자증권(주) 외 1명 (‘도이치방크 아게’로 변경)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만기일 종가조작	2013. 9. 소송허가결정 2016. 6. 대법원 소송허가결정 확정 2017. 1. 본안 1심 판결(일부 인용) 2017. 7. 항소 취하(확정) 2017. 11. 분배계획안 인가결정 2019. 5. 분배종료(7년 2개월 소요)

연 번	소 제기 공고	사건번호	피고	사건 내용	경과
5	2013.10.	서울중앙 13가합74313 서울고등 20나2039731	지에스건설(주)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2015. 2. 소송허가결정 2016. 6. 대법원 소송허가결정 확정 2020. 9. 본안 1심 판결(원고 청구기각) 2021. 3. 항소심 화해허가 결정 2021. 5. 분배계획안 인가결정 2022. 11. 25. 분배보고서
6	2013.12.	서울남부 13가합107585	(주)진메트릭스	시세조종	2018. 8. 소송허가결정 2018. 11. 소송허가결정 확정(항고취하)
	2013.12.	서울서부 13가합35856			2019. 1. 본안 1심 화해허가 결 정 2019. 3. 분배계획안 인가결정
	2013.12.	수원지법 13가합26404			2020. 10. 분배종료(6년 10개월 소 요)
7	2014. 6.	서울중앙 14가합31627	동양증권(주)외 20명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명으로 변경)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2016. 9. 소송불허가 결정 2018. 7. 대법원 파기환송 2019. 10. 서울고법 소송허가 결정 2020. 2. 대법원 소송허가 결정 확정 2023. 1. 본안 1심 선고(원고 청구기각) 2024. 1. 항소심 항소기각
8	2014. 7.	서울중앙 14가합30150	동양증권(주) 외 10명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명으로 변경)	부정거래행위	2018. 1. 소송불허가 결정 2018. 10. 서울고법 항고기각 결 정 2023. 6. 대법원 재항고 기각 2023. 7. 소송불허가결정 확정
9	2016. 1.	서울서부 16가합30418	삼일회계법인	동양그룹 계열사 회계감사의무 위반	2018. 11. 소송불허가 결정 2018. 12. 소송불허가 결정 확정
10	2017. 9.	서울중앙 15가합9047	에스티엑스조 션해양(주) 외 2명 (주식회사 케이조선 외 3명으로 변경) 삼정회계법인 외1명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2021. 11. 소송불허가 결정 2023. 4. 항소심 소송허가 결정 2023. 8. 대법원 재항고 기각 2023. 10. 소송허가결정(피고: 삼정 회계법인) 2024. 7. 변론기일 공고 2024. 10. 선고기일 공고 2024. 12. 판결고지

연 번	소 제기 공고	사건번호	피고	사건 내용	경과
11	2023. 1.	서울남부 22가합754	오스텀 임플란트 주식회사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2023. 1. 소제기 (소송허가 1심 진행 중)
12	2024. 3.	서울남부 15가합161 24카키233	엔에이치 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허위기재	2024. 3. 소제기 (소송허가 1심 진행 중)
13	2024. 3.	서울중앙 24가합1359 24카기402	주식회사 파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허위기재	2024. 3. 소제기 2024. 7. 대표당사자 선임결정

자료: 법무부

2. 제정안에 따른 소비자집단소송의 적용범위

제정안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13.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함에 있어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幫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계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 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외 입법 사례

(1) 미국 -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 의의

- 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을 대표하여 1인 또는 수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집단에 속하는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소송
- ②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시행되며 집단 구성원이 복수의 주 출신이거나 연방법 관련 문제인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

○ 형태

위법행위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소제기요건

- ① 집단 구성원이 너무 많아 공동소송이 비현실적일 것 ②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있을 것 ③ 대표당사자의 주장과 항변이 집단 구성원 전원의 주장과 항변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 ④ 대표당사자는 집단 구성원 전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

○ 소송절차

- ① 법원은 집단 소송 허가여부를 결정 ②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송의 성격 및 제외신청권리 등을 구성원들에게 고지할 것을 명함.

*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 구성원이 신청에 의해 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외신청권리(opt-out)를 인정

○ 판결의 효력

법원이 집단구성원으로 정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음.

○ 배상금의 분배

피고측이 출자한 자금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

(2) 독일

○ 단체소송 개관

-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소비자센터 및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절차로 금지청구소송법상 금지청구소송(Unterlassungsklage), 부정경쟁금지법상 이익환수청구소송(Gewinnabschöpfungsklage), 자본투자자표본확인소송법 및 독일 민사소송법의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이 시행되었고, 2023년 소비자권리실행법 제정으로 구체청구소송이 제도화됨

○ 금지청구소송법(Unterlassungsklagengesetz) 등의 금지청구소송

- 2002년 ‘소비자법 위반과 기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UKlaG)’이 시행됨
- 무효인 약관의 사용자에게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철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권한은 개별 소비자가 행사할 수 없고 적격단체(berechtigte Stelle)에 대해서만 인정
 - * 다만, ‘금지청구소송법(UKlaG)’은 노동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부정경쟁금지법, 경쟁제한금지법에서도 단체소송형태의 금지청구 인정
 - * 2023년 ‘단체소송지침이행법(VRUG)’에 의한 개정에서 적격단체 관련 부분에서 일부 변화

○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득환수청구권(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제도 도입

UWG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부당이득환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UWG를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의 이득환수청구권 도입

- 주요 내용

고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또는 제7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거래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국고에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

구하는 절차로 법에서 규정한 단체*에 의하여 단체소송 형태로 제기됨

* 자격 있는 소비자단체 등 금지 및 제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와 동일함

* 경쟁제한금지법에서도 단체소송형태의 이득환수청구 인정

○ 자본투자자대표소송법(Kapitalanleger-Musterverfahrensgesetz-KapMuG)상 표본절차

- 제도 도입

도이체텔레콤 사건에서 16,000여명의 투자자가 매매 안내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어 약 2500건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2024년 7월 상시법으로 제정됨

- 주요 내용

자본투자자 표본절차에 따른 재판은 ①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과 이행청구권을 기초로 소를 제기, ② 원고들이 확인목표를 정하는 표본절차를 신청, ③ 수소법원의 제시결정(Vorlagebeschluss) 및 원고들의 소송 중지, ④ 고등법원에 의한 표본원고의 선정과 제소하지 않은 사람들의 서면신고, ⑤ 표본재판의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표본재판은 수소법원의 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원고들의 개별 소송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음

2024년 7월 제정된 자본투자자대표소송법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모델 절차를 신속화하고, 의무적인 절차 중지를 폐지하였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등법원에 증거제출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됨

○ 독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의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 제도 도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집단적 권리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일환으로, 2015년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8년 독일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23년 소비자권리실행법에 통합됨

- 주요내용

금지청구소송법(UKlaG)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최소 10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청구권 존부에 관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요건 충족 유무 또는 법률관계의 해명(이를 ‘확인 목표’라 함)에 관하여 관할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에 확인을 구하는 절차

소비자 첫 번째 변론기일까지 참가(신고) 가능하며, 고등법원의 표본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신고한 소비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자신의 손해 증명하고 개별적 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자 권리의 일괄 실행에 관한 법률(Verbraucherrechterdurchsetzungsgesetz, VDuG, 이하 ‘소비자권리실행법’)의 구제청구소송

- 제도도입

구제청구소송을 제도화하고 기존 독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표본확인소송을 통합하는 내용의 소비자권리실행법 제정

* 2023. 10. 13. 제정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및 지침 2009/22EG의 폐지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의 (EU) 2020/1828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이하 단체소송지침이행법; VRUG)’을 통해 도입됨

- 주요내용

소비자들의 청구가 본질적으로 동종인 경우만 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집단적 권리실행절차가 4단계 즉, ① 구제원인판결, ② 소송상 화해의 시도, ③ 구제종국판결과 ④ 분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청구소송과 그에 따르는 분배절차를 제도화함

그리고 기존 독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표본확인소송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단체소송 및 옵트인제, 관할 및 심급) 이를 소비자권리실행법에 통합함

원고적격단체의 범위를 넓히면서 필요한 소비자 정족수 등에서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함

(3) 일본 - 소비자집단소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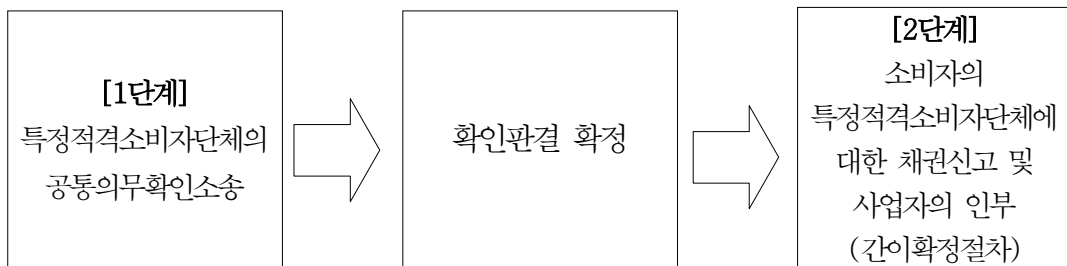
○ 제도도입

2013년 12월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공동의무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절차특례법」 제정 (※ 3년 내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행)

○ 구조

제1단계 절차인 공동의무확인소송과 제2단계 절차인 대상채권의 확정 절차로 구성

< 기본구조 >



○ 제1단계 - 공동의무확인의 소

- 개념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대상소비자의 수권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

- 근거규정

①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상당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② 이들 소비자에 공통되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③ 개개의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그 금전의 지급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이들 소비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2조제4호)

- 당사자

원고적격은 특정적격소비자단체, 피고적격은 사업자(제1단계, 제2단계 동일)

* 2022년 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업감독자(제3조 제1항 제5호), 피용자(3조 제3항 제3호)를 피고로 하는 것도 인정됨

- 대상

‘소비자계약’에 관한 ① 계약상 채무의 이행청구 ②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 ③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③ 내지 ⑤의 손해배상청구 중 확대손해, 일실이익, 인신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는 제외되었으나, 2022년 법 개정으로 일정한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공통의무확인소송 대상에 포함됨

- 확정판결의 효력의 확장

① 당사자 ② 원고 외의 특정적격소비자단체 ③ 대상소비자로서 후에 간이확정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자에게 효력이 미침

○ 제2단계 - 간이확정절차

- 채권자 확정 절차

① 확인판결을 얻은 특정적격소비자단체의 간이확정절차 개시신청 → ② 법원의 개시결정 → ③ 대상소비자에게 통지 및 공고(대상소비자의 수권을 받기 위한 절차) → ④ 간이확정절차 신청단체의 채권신고 및 상대방의 인부(부인 시 법원의 간이확정결정) → ⑤ 간이확정결정에 대한 이의 시 소 제기 의제

- 효력

① 상대방이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신고소비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 가능 ② 간이확정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4) 프랑스(소비자법, Code de la consommation)

○ 사소권(action civile)

- 개념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소비자의 집단이익(소비자들의 개별적 이익의 합산이 아니라 추상적 소비자 집단의 손해를 의미)에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사소당사자로서 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요건

① 주체가 인가된 소비자단체일 것, ② 추상적인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 ③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상의 형벌 규정을 위반할 것

- 형태

민사법원 뿐만 아니라 형사법원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도 가능

- 효과

사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얻은 손해배상금은 승소한 소비자단체에게 귀속되며 개별 소비자에게 분배할 필요 없음.

○ 소송참가(intervention en justice)

- 개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여 소비자의 집단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요건

① 주체가 인가된 소비자단체일 것 ② 추상적인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 ③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상의 비형벌 규정을 위반할 것 ④ 소비자가 미리 소송을 제기할 것

○ 공동대리소송

- 개념

소비자단체는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복수의 소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구별

① 추상적 소비자의 집단이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개별적 이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소권 및 소송참가와 구별, ② 사업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소송참가와 같고 사소권과 구별

- 요건

① 주체가 인가된 전국규모의 소비자단체일 것 ② 동일한 사업자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원인에 기해 피해를 입은 2인 이상 소비자의 소송수행권 위임이 있을 것

- 효과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소비자단체가 아니라 수권한 소비자에게 귀속

(5) 영국

○ 개관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따라 ‘참가신고형(Opt-in 방식)’만이 인정, 예외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법 분야에 한해 미국식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제도를 도입

○ 참가신고형 제도(그룹소송·통합소송: group litigation)

- 의의

2000년 민사소송규칙은 법원의 통합소송명령(Group Litigation Order)에 따라 공통 또는 관련 있는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발생시키는 다수의 청구를 통합하는 소송절차를 규정

- 기본절차

① 당사자(원고·피고)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른 통합소송명령으로 개시, ② 통합등록부에 통합되는 청구 및 당사자를 등록, ③ 통합소송을 심리할 관리법원을 지정·이송, ④ 판결의 효력은 그룹에 등록된 모든 당사자를 구속

○ 제외신고형 제도(집단소송: opt-out collective proceedings)

- 제도도입

경쟁법 분야 소비자·기업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부당공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금지 위반에 한정된 제외신고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2015년 1월 Consumer Rights Act of 2015의 제정을 통해 Competition Act of 1998을 개정

- 대표당사자

집단의 일원 또는 경쟁항소법원(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이 대표당사자로 인정하는 자

- 대상

경쟁법(Competition Act of 1998) 상 부당공동행위(담합)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반행위 금지청구

- 절차

경쟁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서 대표의 적절성, 사안 쟁점의 공통성 등 집단소송 허가절차를 거쳐 진행

자료: 법무부